

인 사 규 정

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2 제2항 중 “원칙적으로”를 “원칙적으로 20년 이상 근속(공단 5년 이상 근속)하고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의 근속년수는 재직 전 공무원 및 군 경력과 공기업 근무경력을 공단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하며, 기타 공로연수 운영관련 세부기준은 지방공무원 인사 분야 통합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8조의2(휴직자등의 결원보충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인사규정 제30조제1항과 제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<u>원칙적으로</u> 정년퇴직일 전 6월 이내인자에 한하여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, 3급 이상은 본인희망 및 동의가 있는 경우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 공로연수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다. 다만, 공로연수로 인한 당해 직급 또는 상당 직위에 결원 발생 시에 공로연수발령일로부터 공로연수자의 직급 또는 상당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</p>	<p>제38조의2(휴직자등의 결원보충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인사규정 제30조제1항과 제 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<u>원칙적으로 20년 이상 근속(공단 5년 이상 근속)하고</u>, 정년 퇴직일 전 6월 이내인자에 한하여 공로연수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, 3급 이상은 본인희망 및 동의가 있는 경우 정년퇴직일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 공로연수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다. 다만, 공로연수로 인한 당해직급 또는 상당 직위에 결원발생 시에 공로연수발령일로부터 공로연수자의 직급 또는 상당 직위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.</p>

<신 설>

③ (생 략)

③ 제2항의 근속년수는 재직 전 공무원 및 군 경력과 공기업 근무경력을 공단 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산정하며, 기타 공로연수 운영관련 세부기준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.

④ (현행 ③과 같음)